

파독 광부 · 간호사 · 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631
----------	-------

발의연월일 : 2026. 2. 6.

발 의 자 : 박홍배 · 이광희 · 김남근
박희승 · 김우영 · 정준호
이정현 · 박 정 · 김한규
민병덕 · 박정현 · 정태호
김현정 · 최혁진 · 박균택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파독 광부 · 간호사 · 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은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경제발전에 기여한 파독 근로자의 헌신과 공로를 기리기 위한 지원 및 기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지원 대상의 범위와 지원 내용이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고령화 · 생활환경 변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상당수 파독 광부 · 간호사 · 간호조무사가 해외에 거주하거나 외국 국적을 취득한 상태로 고령기에 접어들고 있음에도, 현행 법체계에서는 국적이나 거주지로 인해 지원에서 배제될 우려가 있으며, 의료 · 생활 지원이나 주거 안정과 관련한 지원 근거도 명확하지 않은 실

정임.

이에 지원대상을 국적·거주지와 무관하게 명확히 하고, 의료지원·생활지원 및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 근거를 추가함으로써 파독 근로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관련 업무의 위임·위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지방자치단체와의 역할 분담을 통해 제도의 집행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3조, 제6조).

법률 제 호

파독 광부 · 간호사 · 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독 광부 · 간호사 · 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과”를 “국적 · 거주지를 불문하고 다음과”로 한다.

제3조제1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의료지원 및 생활지원을 위한 지원

5.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

제6조의 제목 중 “위탁”을 “위임 ·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관련”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관련”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지원대상) 이 법에서 적용 받는 지원대상은 <u>다음과 같다</u>	제2조(지원대상) ----- ----- <u>국적 · 거주지</u> <u>를 불문하고 다음과</u>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제3조(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	제3조(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
① 국가는 지원대상자에게 다 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u><신 설></u>	<u>4. 의료지원 및 생활지원을 위</u> <u>한 지원</u>
<u><신 설></u>	<u>5.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u>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업무의 위탁)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관련</u> 법인 또는 단 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업무의 위임 · 위탁) ----- ----- ----- ----- <u>지방자치단체</u> <u>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관련</u> --- ----- -.